|  |  |  |
| --- | --- | --- |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인사부규[2016]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구) :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방법>을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6년 7월 25일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방법  제1조 노동보장 감찰의 지향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업분류 감독관리를 실행하며 기업이 노동보장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준법 및 신의성실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보장 감찰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는 기업의 노동보장 법률•법규 및 규장 준수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의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을 평가하는 행위이다.  제3조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는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성,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노동보장 감찰 관할 범위에 따라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노동보장감찰기구가 조직 및 실시를 담당하며 매년 1회씩 평가를 전개한다.  제5조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는 주로 일상 감찰•검사, 서면자료 심사, 제보•신고 조사처리 및 특별검사 등 노동보장 감찰과 기타 관련 업무 중에서 취득한 기업의 직전연도 신용기록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를 전개함에 있어 현지 정부 관련 부서와 노조조직의 의견 및 건의를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을 평가한다.  (1) 내부 노동보장 규칙제도 제정 상황;  (2) 근로자와의 노동계약 체결 상황;  (3) 노무파견 규정 준수 상황;  (4) 소년근로자 사용금지 규정 준수 상황;  (5) 여성근로자 및 미성년근로자 특수 노동보호 규정 준수 상황;  (6)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 규정 준수 상황;  (7) 근로자 급여 지급 상황 및 최저급여 기준 집행 상황;  (8) 각 항 사회보험 가입 상황 및 사회보헙료 납부 상황;  (9) 기타 노동보장 법률•법규 및 규장 준수 상황.  제7조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1) 기업이 노동보장 법률•법규 및 규장을 준수하였고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A등급으로 평정한다.  (2) 기업이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으나 C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B급으로 평정한다.  (3)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C등급으로 평정한다.  ①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3회 이상(3회 포함)의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②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를 행함으로써 집단적 사건, 극단적 사건이 유발하였거나 심각한 부정적 사회영향을 초래한 경우;  ③ 소년근로자 사용, 노동 강요 등 중대한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  ④ 노동보장 감찰의 기한부 시정 명령, 행정처리 결정 또는 행정처벌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가 실시하는 노동보장 감찰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⑥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경우.  제8조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를 실시한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적당한 방식으로 평가결과를 기업에게 고지할 수 있다.  제9조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결과는 기업의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기록에 편입하여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 상황에 근거하여 노동보장 감찰 관할 범위 내의 기업에 대하여 분류 및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A등급으로 평정된 기업의 경우 노동보장 감찰의 일상 감찰•검사 빈도와 횟수를 적당히 줄인다.  B등급으로 평정된 기업의 경우 노동보장 감찰의 일상 감찰•검사 빈도와 횟수를 적당히 늘린다.  C등급으로 평정된 기업의 경우 노동보장 감찰의 중점 대상에 포함시키고 노동보장 감찰의 일상 감찰•검사를 강화한다.  제11조 C등급으로 평정된 기업에 대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해당 기업의 주요 책임자 및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보장 법률•법규 및 규장을 준수하도록 독촉한다.  제12조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를 행함으로써 등급 인하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 평가를 실시한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여 적시에 해당 기업의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공상, 금융, 주택도농건설, 세무 등 부서 및 노조조직과 신용정보 교환•공유 체제를 구축하여 신용 양호 기업에 대한 연합격려와 신용 상실 기업에 대한 연합징계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노동보장 감찰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강화하여야 하며 정보 기술 및 수단을 충분히 이용하고 정보 자원을 통합하여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의 업무인력이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 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16조 기타 노동보장 감찰 대상에 대하여 전개하는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 업무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 성(省)급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이 방법과 본 지방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실시방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18조 이 방법은 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 **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印发《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办法》的通知**  人社部规〔2016〕1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  　　现将《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办法》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人力资源社会保障部  　　2016年7月25日  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办法  　　第一条 为增强劳动保障监察的针对性和效率，实行企业分类监管，督促企业遵守劳动保障法律规定，履行守法诚信义务，根据《劳动保障监察条例》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是根据企业遵守劳动保障法律、法规和规章的情况，对企业进行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的行为。  　　第三条 开展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应当根据事实，遵循依法、公正原则。  　　第四条 县级以上地方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按照劳动保障监察管辖范围负责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工作，由劳动保障监察机构负责组织实施,每年开展一次评价。  　　第五条 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主要依据日常巡视检查、书面材料审查、举报投诉查处以及专项检查等劳动保障监察和其他有关工作中取得的企业上一年度信用记录进行。  　　开展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应注意听取当地政府有关部门及工会组织的意见和建议。  　　第六条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根据下列情况对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进行评价：  　　（一）制定内部劳动保障规章制度的情况；  　　（二）与劳动者订立劳动合同的情况；  　　（三）遵守劳务派遣规定的情况；  　　（四）遵守禁止使用童工规定的情况；  　　（五）遵守女职工和未成年工特殊劳动保护规定的情况；  　　（六）遵守工作时间和休息休假规定的情况；  　　（七）支付劳动者工资和执行最低工资标准的情况；  　　（八）参加各项社会保险和缴纳社会保险费的情况；  　　（九）其他遵守劳动保障法律、法规和规章的情况。  　　第七条 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划分为A、B、C三级：  　　（一）企业遵守劳动保障法律、法规和规章，未因劳动保障违法行为被查处的，评为A级。  　　（二）企业因劳动保障违法行为被查处，但不属于C级所列情形的，评为B级。  　　（三）企业存在下列情形之一的，评为C级。  　　1.因劳动保障违法行为被查处三次以上（含三次）的；  　　2.因劳动保障违法行为引发群体性事件、极端事件或造成严重不良社会影响的；  　　3.因使用童工、强迫劳动等严重劳动保障违法行为被查处的；  　　4.拒不履行劳动保障监察限期整改指令、行政处理决定或者行政处罚决定的；  　　5.无理抗拒、阻挠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实施劳动保障监察的；  　　6.因劳动保障违法行为被追究刑事责任的。  　　第八条 作出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的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可以适当方式将评价结果告知企业。  　　第九条 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结果应归入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档案，至少保留3年。  　　第十条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根据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情况，对劳动保障监察管辖范围内的企业实行分类监管。  　　对于被评为A级的企业，适当减少劳动保障监察日常巡视检查频次。  　　对于被评为B级的企业，适当增加劳动保障监察日常巡视检查频次。  　　对于被评为C级的企业，列入劳动保障监察重点对象，强化劳动保障监察日常巡视检查。  　　第十一条 对于被评为C级的企业，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对其主要负责人、直接责任人进行约谈，敦促其遵守劳动保障法律、法规和规章。  　　第十二条 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结果确定后，发生劳动保障违法行为需要降级的，作出评价的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重新评价，及时调整其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  　　第十三条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与工商、金融、住房城乡建设、税务等部门和工会组织建立信用信息交换共享机制，对企业实行守信联合激励和失信联合惩戒。  　　第十四条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加强劳动保障监察管理信息系统建设，充分利用信息技术和手段，整合信息资源，提高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工作效率。  　　第十五条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工作人员在企业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按照有关规定给予处分。  　　第十六条 对其他劳动保障监察对象开展劳动保障守法诚信等级评价工作，依照本办法执行。  　　第十七条 省级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可根据本办法和本地实际，制定实施办法。  　　第十八条 本办法自2017年1月1日起施行。 |